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4. 06

[가칭]화성오산도로(주)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화성시 4×9 간선도로계획의 연계망 구축
 - 간선도로의 남북축, 동서축 연결도로망 필요
 - 화성시 Circle 도시고속도로망 구축 필요
- 화성시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
 - 5대 중심생활권의 이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연계 도로망 필요
- 관내 주요 간선도로망의 교통 지정체 해소
 - 인구 및 교통수요 증가로 관내 포화된 도로망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로망 필요
- 대규모 산업단지의 효율적 물류처리를 통한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다수 분포된 산업단지의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계획 구축을 위한 도로망 공급 필요

1.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 2]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비고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9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본계획 해당

1.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별표 3]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표 1.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비고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향후 시행 예정
○ 계획노선	○ 연장 : L=13.3km		

1.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근거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였고, 법 제24조제6항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목 등을 포함하여 결정함.

<표 1.3-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p>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②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표 1.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②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⑥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p>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 2024. 04.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4.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4.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설정 및 결정내용 공개
- 2024.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예정)
- 2024. 08 ~ 09 :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 수렴(예정)
- 2024.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예정)

1.5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다. 연장 : L = 13.3km

라. 설계속도 : 90km/h

마. 공사기간 : 2026년 1월 ~ 2029년 12월(48개월)

바. 운영기간 : 2030년 1월 ~ 2079년 12월(50년)

사. 계획수립자 : [가칭]화성오산도로(주)

아. 승인기관 : 화성시

자.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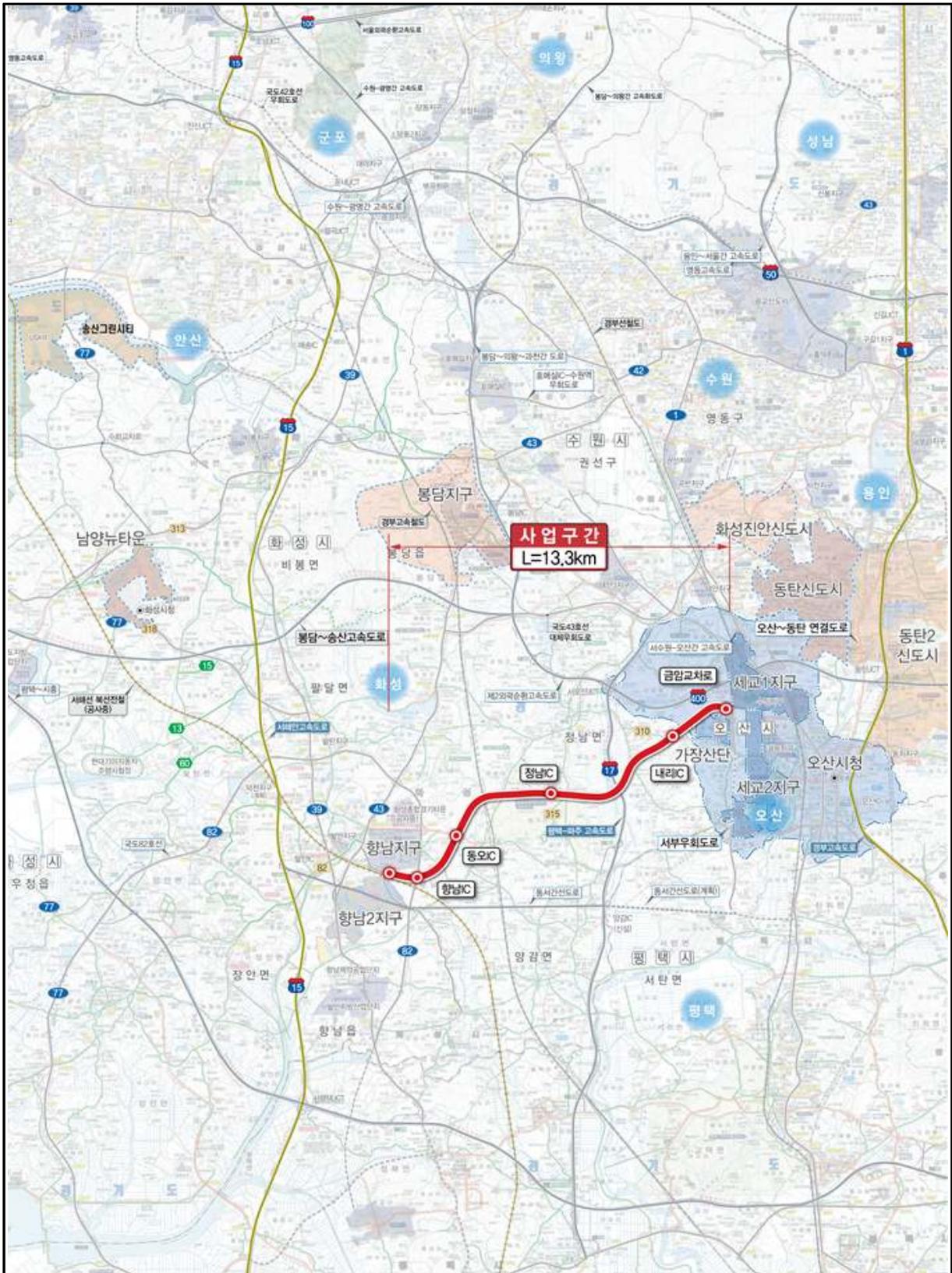
차. 계획의 내용

<표 1.5-1> 계획의 내용

구분		수량	비고	
연장(km)		13.3km	설계속도 : 90km/h	
교량공 (개소/m)	본선	장대교	4개소/605m	-
		소교량	9개소/345m	-
	지하차도	1개소/346m	-	
	총계	14개소/1,296m	-	
터널공 (개소/m)	분리터널	2개소/1,573m	동오(NATM, 면벽형), 세교터널(NATM, 벨마우스+면벽형)	
출입시설		6개소	행정교차로, 향남나들목, 동오나들목, 정남나들목, 내리나들목, 금암교차로	
스마트톨링		9개소	본선2개소, 교차로 7개소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정남나들목 연결도로	

1.6 계획의 기대효과

- 화성시 간선도로망의 보조축 역할 및 지역주민 교통편익 증대
 - 경기도 간선도로망 동서2축(국지도82호선)을 보완·대체하여 지역간 간선기능 수행
 - 주요거점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대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

제2장 대상지역의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2.1.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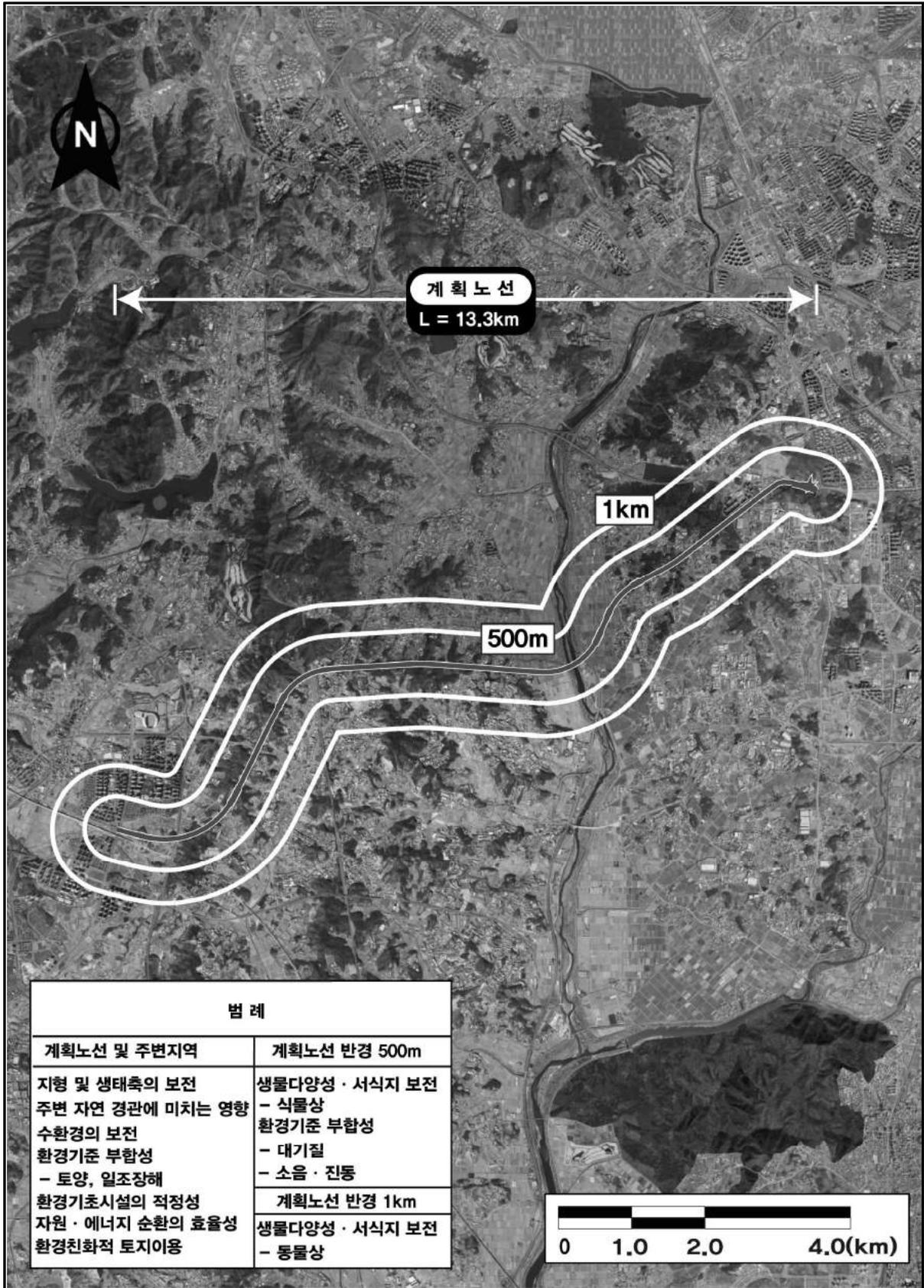
- 본 개발기본계획의 성격, 입지 여건, 환경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직·간접적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검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대상지역 설정사유
	공간적	시간적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계획노선 및 반경 (500m~1km)	공사단계 운영단계	○현지 및 문헌조사, 동·식물상 영향예측, 저감방안 검토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주요 생태축 조사 ○계획노선 인근 지형 현황 및 생태축 훼손여부 검토
3)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
4) 수환경의 보전(수질)	계획노선 주변수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수질오염원(토사유출 등)가중으로 인한 수질 영향 예측 ○계획노선 운영시 우수에 의한 영향 예측

<표 2.1-1> 계속

평가항목	대상지역의 범위			대상지역 설정사유
	공간적	시간적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계획노선 주변 기상대	-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 활용
	대기질	계획노선 반경 500m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건설장비 이용 및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정온 시설 영향 ◦운영시 이동오염원에 의한 정온 시설 영향
	토 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공사시 폐유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소음·진동	계획노선 반경 500m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진동 영향 ◦운영시 계획노선 이용 차량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진동 영향
	일조장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단계	◦교량 등에 따른 구조물 설치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계획노선이 속한 지역의 관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등의 적정여부 파악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수립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예측 ◦계획시행시 수목 훼손, 이식계획 수립으로 인한 영향 검토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단계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변화 검토



(그림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2.2 환경영향평가

2.2.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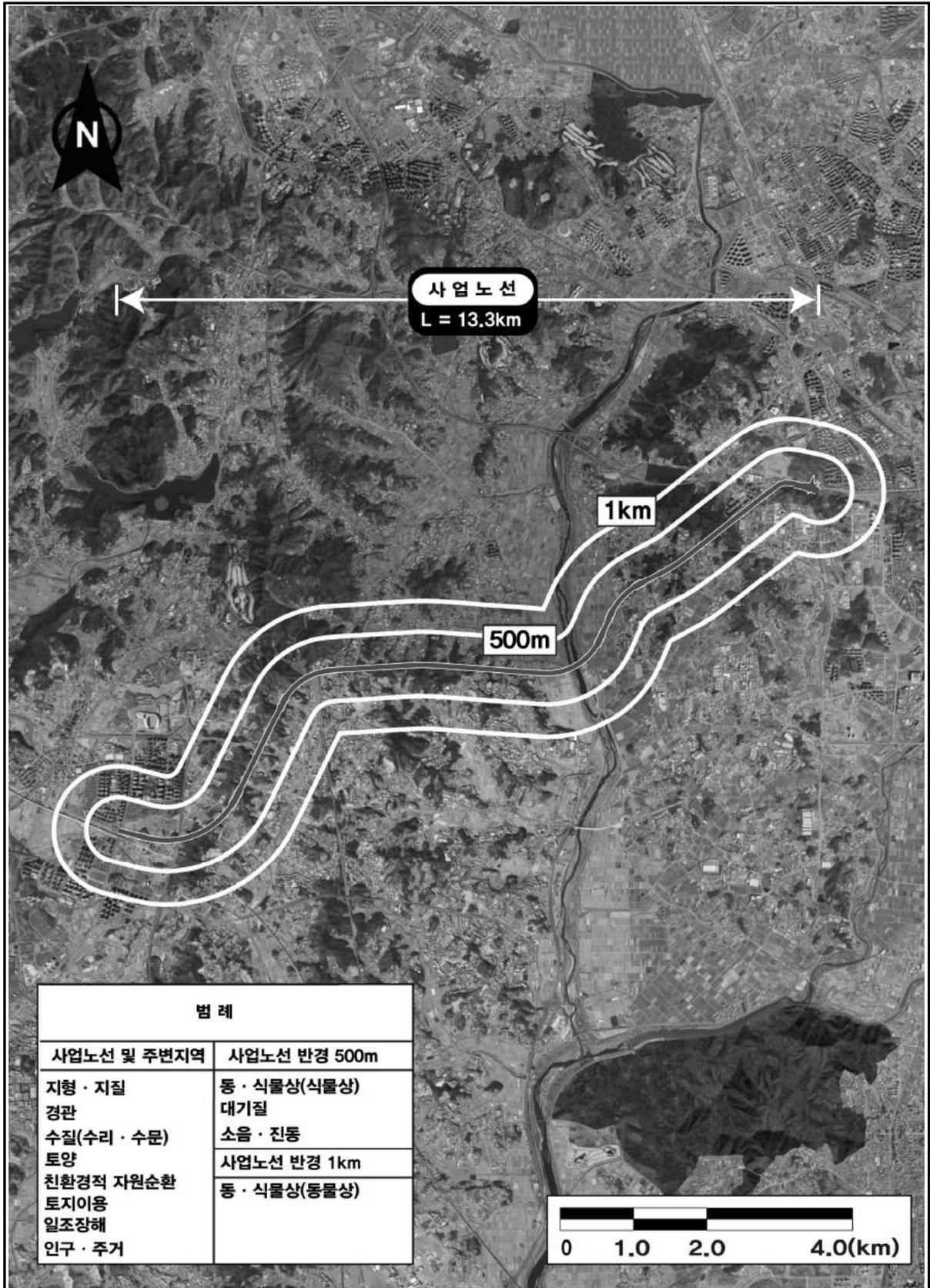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3-72호」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항목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2-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대상지역 설정사유
	공간적	시간적	
가. 자연생태환경			
1) 동·식물상	사업노선 반경 (500m~1km)	공사단계 운영단계	○문헌조사, 동·식물상 영향예측, 저감방안 검토
2) 자연환경자산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자연환경자산 검토
나. 대기환경			
1) 기상	사업노선 주변 기상대	-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 활용
2) 대기질	사업노선 반경 500m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건설장비 이용 및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정온 시설 영향 ○운영시 이동오염원에 의한 정온 시설 영향
3) 온실가스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포함)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 스 발생 예측 ○계획시행시 수목 훼손, 이식계획 수립으로 인한 영향 검토
다. 수환경			
1) 수질(수리·수문)	사업노선 주변수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수질오염원(토사유출 등) 가중 으로 인한 수질 영향 예측 ○계획노선 운영시 우수에 의한 영향 예측
라. 토지환경			
1) 토지이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단계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변화 검토
2) 토양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공사시 폐유발생 등으로 인한 토 양오염 우려
3) 지형·지질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주요 생태 축 조사 ○계획노선 인근 지형 현황 및 생 태축 훼손여부 검토

<표 2.2-1> 계속

평가항목	대상지역의 범위		대상지역 설정사유
	공간적	시간적	
마. 생활환경			
1) 친환경적자원순환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수립
2) 소음·진동	사업노선 반경 500m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진동 영향 ◦운영시 계획노선 이용 차량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진동 영향
3) 경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
4) 일조장해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일조영향 예측
바. 사회·경제환경			
1) 인구·주거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단계	◦사업시행 전·후의 인구·주거 검토



(그림 2.2-1) 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계획비교, 입지, 수단·방법, 수요·공급, 시기·순서, 기타) 중 계획비교, 입지 및 수단·방법에 대한 각 대안 검토내용을 제시하겠음.

<표 5.1-1> 대안의 종류

대안종류	대안 설정방법	선정항목
계획비교	○ 해당 계획의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의 수립(Action)에 대한 비교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	◎
수단·방법	○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
수요·공급	○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요·공급량의 변경에 대한 대안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의 변경에 대한 대안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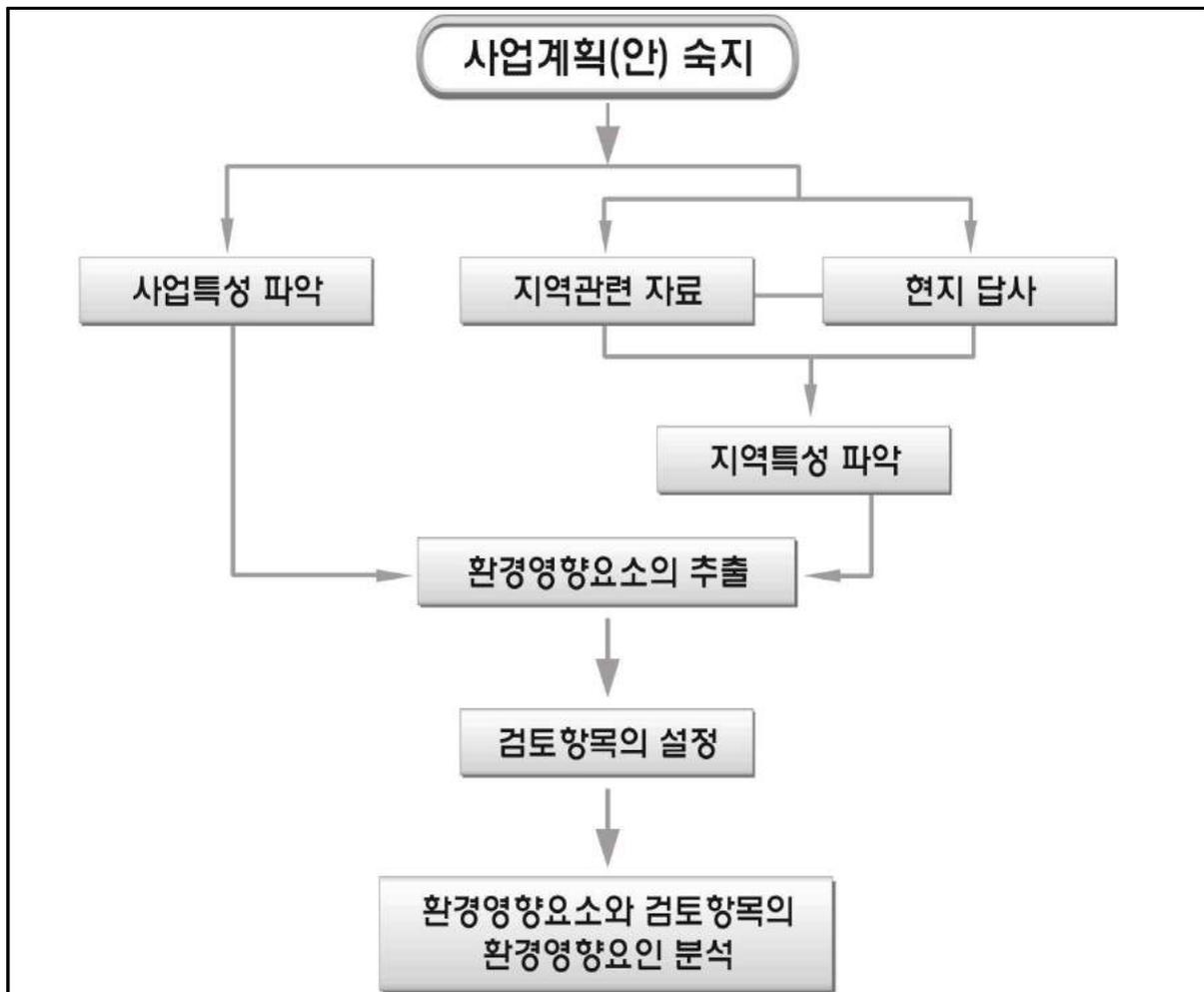
자료)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의 설정

4.1 평가항목 설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계획노선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의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함.
-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후 계획노선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그림 4.1-1)의 절차를 이용하여 <표 4.1-1>과 같이 추출함.



(그림 4.1-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표 4.1-1> 환경영향요소 추출

개발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정성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발생 ◦ 토사유출 및 비점오염원 발생 ◦ 기존시설물 철거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 도로 및 법면, 도로시설물의 발생

4.2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평가항목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앞서 추출한 환경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1. 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에 제시된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4.2-1> 평가항목 설정 및 선정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주요 검토내용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 부합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환경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학술적, 문화적 또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분포 및 훼손여부 파악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도로 설치에 따른 경관 변화 검토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운영시 인근 수계 비점오염원 영향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 발생, 일조 장애 영향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폐유 및 건설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	

나.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변화, 오염원의 발생 등 주변지역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평가범위(조사) 및 예측·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4.2-2> 환경영향 항목별 검토방법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예측·분석 방법	
계획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입 지 의 타 당 성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식물상 : 계획노선 반경 500m ○동물상 : 계획노선 반경 1km	○현지 및 문헌조사 ○법정보호종 등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파악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곤충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계획수립으로 인한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동·식물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생태축 훼손여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파악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으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경관
		○계획노선 주변수계	○수질현황조사 ○공사시 토사 유출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영향 검토 ○수질오염총량유역 및 비점오염물질 영향검토	수질
	생 활 환 경 의 안 정 성	○계획노선 주변 500m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주변 현황조사) ○대기질(국가대기오염 측정망), 토양(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측정망), 소음·진동(기조사자료 및 측정망) 등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파악, 교량구간 일조영향 검토 ○분야별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	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일조장애

<표 4.2-2> 계속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예측·분석 방법	
입 지 의 타 당 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계획시행시(공사시) 하수종말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현황 및 연계처리 방안 검토 	지역개발,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 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계획시행시(공사시) 폐기물, 분 뇨 등 발생 및 처리방안 검토 	온실가스,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문헌조사 ◦계획시행시 토지이용 변화 검 토 	토지이용

4.3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노선을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사업노선의 계획특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표 4.3-1>과 같이 추출함.

<표 4.3-1> 환경영향요소 추출

공 사 시	운 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 공사 ○ 토사 운반 ○ 공사인부 및 건설장비 투입 ○ 공공토지 및 사유지의 편입 ○ 수목 훼손 ○ 기존시설물 철거 및 시설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차량 운행 ○ 노면 배수(비점오염원) ○ 도로 및 법면, 도로시설물의 발생

나.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환경영향요소 추출은 사업노선 및 주변의 인접 영향권까지 포함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로 구분하여 환경항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향요소를 추출함.

<표 4.3-2>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 개발되면 긍정적이거나 크기는 작다	○	○ 악영향이 크다

<표 4.3-3>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구분		공사시					운영시			
		절·성 토공사	토사 운반	공사 인부 및 건설 장비 투입	공공 토지 및 사유지 편입	수목 훼손	시설물 철거 및 설치	차량 운행	노면 배수	도로 사면 및 시설물 발생
대기 환경	기상	△		△				△		
	대기질	○	○	○		△		□		
	온실 가스			○		□				
수환경	수질 (수리· 수문)	□		□					□	△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토양	□		□						
	지형· 지질	□		□						
자연 생태 환경	동· 식물상				△	□				
	자연환경 자산				△	□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소음· 진동			□			□	□		
	경관						△			△
	일조장해									□
사회 경제 환경	인구· 주거			▲				■		

다. 평가항목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에 제시된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4.3-4> 평가항목 설정 및 선정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주요 검토내용	선정결과
자연환경	◦동·식물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환경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중점항목
	◦자연환경자산	◦법정보호종 및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자산 영향여부 검토	일반항목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 활용	일반항목
	◦대기질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차량운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중점항목
	◦악취	◦사업특성상 영향이 없으므로 제외	제외항목
	◦온실가스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포함되어 제외	제외항목
수환경	◦수질(수리·수문)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운영시 인근 수계 비점오염원 영향	중점항목
	◦해양환경	◦사업노선 주변 해양지역 미분포로 제외	제외항목
토지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	일반항목
	◦토양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등이 예상	일반항목
	◦지형·지질	◦절·성도에 의한 지형 변화, 사면발생 등이 예상	중점항목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일반항목
	◦소음·진동	◦공사시 장비투입 등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운영시 차량운행에 의한 교통소음 발생	중점항목
	◦경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중점항목
	◦위생·공중보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약	제외항목
	◦전파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제외항목
	◦일조장해	◦교량 등 시설물 설치로 인한 일조 영향예상	일반항목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사업시행 전·후의 인구·주거 변화	일반항목
	◦산업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제외항목

라.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변화, 오염원의 발생 등 주변지역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평가범위(조사) 및 예측·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4.3-5> 환경영향 항목별 검토방법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예측·분석 방법	
자연 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식물상 : 사업노선 반경 500m ◦동물상 : 사업노선 반경 1km (광역조사지역)	◦현지 및 문헌조사 ◦법정보호종 등 육상 및 육수 동· 식물상 현황파악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곤충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계획수립으로 인한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
대기 환경	기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사업노선 주변 기상대의 기상요 소별 특성 분석	-
	대기질	◦사업노선 반경 500m	◦문헌조사 및 현황측정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
수 환경	수질 (수리·수문)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문헌조사 및 현황측정 ◦공사시 토사 유출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영향 검토 ◦수질오염총량구역 및 비점오염물질 영향검토	-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 예상	-
	토양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황측정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상	-
	지형·지질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생태축 훼손여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파악	-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업시행시 폐기물, 분뇨 등 발 생 및 처리방안 검토	-
	소음·진동	◦사업노선 반경 500m	◦문헌조사 및 현황측정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
	경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자연경 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일조장해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 영향 검토	-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

4.4 환경현황 조사계획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4.4-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지 조사항목(환경질)

구 분	조사항목	조사 지점	조사횟수	
			전략	환평
대기질	○아황산가스(SO ₂),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 ₂),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 ₃), 납(Pb), 벤젠	5지점	1회	3회
지표수질	○pH, 유량, BOD, TOC, DO, SS,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T-N, T-P, Cd, As, CN, Hg	5지점	1회	3회
지하수질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Pb, F, As, Hg, CN, Cr ⁶⁺ , NH ₃ -N, NO ₃ -N, Cd, 경도, KMnO ₄ 소비량, 냄새, 맛, Cu, 색도, ABS, pH, Zn, Cl ⁻ ,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3지점	1회	3회
토양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CN, BTEX, TPH	3지점	1회	3회
소음·진동	○등가소음도(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레벨(주간 2회, 야간 1회)	5지점	1회	3회

주) 환경영향평가지 조사항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표 4.4-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지 조사항목(동·식물상)

구 분	조사항목	조사 범위	조사횟수	
			전략	환평
육상 생태계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식생보전등급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식생도) 등	계획노선 반경 500m	1회	3회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육상곤충류)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등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등	계획노선 반경 1km		
육수 생태계	○수변식물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지표종 및 분포상황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식물 또는 법정보호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종조성, 현존량, 분포상태, 우점종 및 환경지표종 등 ○어류 -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법정보호종	계획노선 상·하류 100m	1회	3회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5.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주민의견수렴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임.

<표 5.1-1> 주민의견수렴 근거법령

구 분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p>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 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p>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시 행 령	<p>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표 5.1-1> 계 속

구 분	내 용
<p>환경영향평가법 시 행 령</p>	<p>②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p> <p>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p> <p>2.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p> <p>③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환경영향평가법 시 행 령</p>	<p>제15조 (설명회의 개최)</p> <p>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p> <p>③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p> <p>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p> <p>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퍼센트 이상인 경우</p> <p>②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③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p>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p> <p>2. 공청회 일시 및 장소</p> <p>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함.
 - 일간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 지역신문 : 관할 지자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
- 공고내용
 - 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설명회 일시, 장소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화성시)은 공람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화성시장, 오산시장의 의견을 들어 화성시, 오산시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함(공람장소는 화성시 및 오산시와 추후 협의).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비치할 계획임.

마.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의견반영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중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화성시, 오산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임.
- 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시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이며, 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여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표 5.1-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결정내용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 화성시 ○ 공개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 공개기간 : 14일 이상 ○ 공개내용 :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 화성시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지역신문 각각 1회 ○ 공람기간 및 장소 : 화성시, 오산시와 협의 후 결정 (공람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 ○ 공고내용 : 공람기간 및 장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일정, 의견(공청회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 제출시기 및 방법 	-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시방법 및 게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오산시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방법 : 공람기간 내 1회 실시 ○ 개최장소 : 화성시, 오산시와 협의 후 결정 	-
	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주민요구 시 별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요청 30명 이상 - 공청회 요청 5명 이상으로 의견제출 주민 총 수의 50% 이상 	-
	의견반영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방법 : 화성시, 오산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14일 이상 	협의 요청 이전

5.2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동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결정내용 공개절차는 생략할 계획임.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함.
 - 일간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 지역신문 : 관할 지자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
- 공고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설명회 일시, 장소

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화성시, 오산시)은 공람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개발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화성시장, 오산시장의 의견을 들어 화성시, 오산시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함(공람장소는 화성시 및 오산시와 추후 협의).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비치할 계획임.

라.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의견반영 공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중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화성시, 오산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임.

- 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시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이며, 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여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표 5.2-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요약

구 분		내 용	비고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	결정내용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결정내용 공개 진행으로 생략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주관기관 : 화성시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지역신문 각각 1회 ○ 공람기간 및 장소 : 화성시, 오산시와 협의 후 결정 (공람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 ○ 공고내용 : 공람기간 및 장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일정, 의견(공청회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 제출시기 및 방법	-
	게시	○ 게시방법 및 게시내용 - 화성시, 오산시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설명회	○ 개최방법 : 공람기간 내 1회 실시 ○ 개최장소 : 화성시, 오산시와 협의 후 결정	-
	공청회	○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주민요구 시 별도 개최 - 공청회 요청 30명 이상 - 공청회 요청 5명 이상으로 의견제출 주민 총 수의 50% 이상	-
	의견반영 공개	○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 - 공개방법 : 화성시, 오산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14일 이상	협의 요청 이전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9인

<표 6.1-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구분	소속 / 부서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1	화성시청(도로과)	과장	김○○	계획,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2	화성시청(환경정책과)	팀장	황○○	
	3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	김○○	협의기관
	4	수원대학교	교수	이○○	민간전문가
심의 위원	5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박○○	협의기관 추천
	6	공주대학교	교수	김○○	민간전문가
	7	정남면 이장단협의회	총무	민○○	주민대표 (화성시)
	8	세마동 통장단협의회	회장	이○○	주민대표 (오산시)
	9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	민간전문가

6.2 심의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주변 공동공간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라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환경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감대책을 제시. 2.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기 바람. 3. 도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계획 수립 시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지형 및 주변 생태계 현황, 집단 주거시설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인근 생산시설(주거지, 학교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노선 선정 ○ 계획수립 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적의 노선계획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산정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대상지역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할 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노선이 위치한 화성시, 오산시와 협의하여 주민설명회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 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취우조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2024. 5. 3.</p> <p style="text-align: center;">[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계획과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환경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 조성계획 수립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전라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도작성하시기 바람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시행으로 인한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환경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함 2.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한정하여야 함 ○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이 가미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하여야 함 3. 도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4.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3]에 따라 대안은 계획비교 대안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3개 이상 다양하게 설정하고 각 대안별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상안을 설정하여야 하며,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최종안을 선정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1. 화성시청(도로과)</p>	<p style="text-align: center;">2. 화성시청(환경정책과) - 1</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에서 오산시 금암동을 연결하는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라환경영향평가서(조안)를 작성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보전목표를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환경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2.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3. 도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주변 개발 여건, 기존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수립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약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은 위치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 사용지대 및 청명지대, 경·성토사면 높이 및 연광 등 환경적 훼손 현상 제시 4.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징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이상 설정하고, 각 대안의 공통·별도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상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 - 일치비교에서 노선별 생태·환경적 측면의 정량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비점오염물질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평판의 서식 및 이동행동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 계획노선이 물체도리제에 위치하므로 겨울철에 등 이동 경로, 서식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보전방안 등을 수립 ○ (수문) 저하된 굴곡에 따른 지하수 영향, 터널배수, 도시유출,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수문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을 면밀히 조사하고, 저감방안을 검토·제시 ○ (소음·진동) 공사(발파 포함) 및 운영 시 소음·진동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p style="text-align: center;">2024. 5. 7.</p> <p style="text-align: center;">[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3.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1</p>
<p style="text-align: center;">2. 화성시청(환경정책과) - 2</p>	<p style="text-align: center;">3.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1</p>

<div data-bbox="295 414 774 92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지형·지질) 서빙지구 및 청평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 생태계 및 지형 현황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p> <p>○ (경관) 경·성로 등으로 경관 훼손지역 및 교차점지 지역 등을 조망권으로 선정하여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p> <p>○ 현황조사 지점은 공사·운영 시 영향예측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편정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p> <p>-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항목별 조사 시기, 조사지점(도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p> <p>○ (기타)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 대거, 소음·진동 등 누적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p>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주민들이 공감 및 선행피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p> <p>○ 대기질, 소음·진동 등으로 민원이 우려되는 구간은 충분한 설명 및 사전협의를 통한 노선 선정 필요</p> <p>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계획의 적정성 검토 시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무합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제시하고, 근거자료 첨부</p> <p>○ 무연가로는 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자료를 활용하고, 무연가로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p> <p>○ 평가시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p> <p>○ 심의결과를 반영·확정한 평가서의 세부 검토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타 의견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 조정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6.</p> <p style="text-align: center;">심의위원</p> </div>	<div data-bbox="885 380 1380 108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서식 : 제3호 제3항 관련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동보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p> <p>□ 총괄 의견</p> <p>○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드래로 작성</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p>○ 화성시 관선도로 연계방 구역을 위한 계획으로 목표와 일정에서 성격, 내용, 대상지역 지역적 환경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함이 적절함.</p> <p>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경제 환경자의 조화에서 공간적 시간적 평가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함.</p> <p>3. 보지이용 구상안</p> <p>○ 대상지역이 일차, 단, 경 등으로 구상된 지역으로 특성하는 중부 비도시지역이 60%를 차지하고 도시지역의 75.7%가 녹지이며, 오산시는 도시지역으로 주로 구상된 곳임. 대상지역의 현황에는 자연보전지역 포함되지 않고 주로 생태자연도 2-3등급으로 개발에 큰 문제는 없으므로,</p> <p>4. 대안</p> <p>○ 대안 비교시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하며, 입지비교 시 대한 1이 합리치임.</p> <p>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선정은 적절함.</p>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치임.</p> <p>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6.10</p> <p style="text-align: center;">(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p> </div>
<p>3.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2</p>	<p>4. 수원대학교</p>
<div data-bbox="295 1209 774 193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동보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p> <p>□ 총괄 의견</p> <p>○ 본 평가준서에서는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미제시되어 의견 개진이 매우 제한됨. 도로 시설물의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함. 또한 노선 대안 비교 시 교통량, 인원 등에 관한 비교·분석자료가 있으나 대안 노선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계획 수립이 필요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p>○ 2개소의 터널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치가 표기되지 않음. 터널 공사 시 숏드리프트 타설 등으로 인해 장암암리성 계수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항목의 터널배수 처리수수량기준에 pH 항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수질항목을 명확히 하여야 함</p> <p>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의견 없음</p> <p>3. 보지이용 구상안</p> <p>○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로 시설물(교량, 터널 등)의 위치, 출입시설 위치, 차선 수 등)가 미제시된바 보다 구체적인 노선계획을 제시하여야 함</p> <p>4. 대안</p> <p>○ 입지 대안 비교 시 각 대안 별 비교평가용 교통량, 인원 등에 관한하여 수행하였으나 대안 노선 통과로 인한 풍·사해에 미치는 영향, 지형 훼손 정도, 인근 경관시설에 미치는 생활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노선 선적이 필요함</p> <p>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터널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발파소음·진동, 대기질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p>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의견 없음</p> <p>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의견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06. 11.</p> <p style="text-align: center;">(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p> </div>	<div data-bbox="885 1220 1380 188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서식 : 제3호 제3항 관련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동보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p> <p>□ 총괄 의견</p> <p>○ 도로노선 선정시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p>○ 계획의 성격, 입지 및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대상지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p> <p>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 및 적정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사업지구 주변에 중시중지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영향 예측시 누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p> <p>3. 보지이용 구상안</p> <p>○ 보지이용구상은 매우 포괄적으로써 방안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p> <p>4. 대안</p> <p>○ 계획비교 및 시·공간에 대한 대안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p> <p>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본 계획은 화성시 관내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점이 될 도로이며 기존 자동 측정자료 등 관련자료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내실있는 평가자가 되도록 하여야 함.</p> <p>○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과 경기도 등 도 조례를 고려하여, 실현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상시 전문가 의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야 함</p> </div>
<p>5. 한국환경연구원</p>	<p>6. 공주대학교 - 1</p>

<div data-bbox="252 322 737 94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p> <p>○ 사업전행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다고 장성적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5. 7.</p> <p style="text-align: center;">(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p> </div>	<div data-bbox="868 322 1315 100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p>○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주민들이 의견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p>○ 소음,분진,진동,환경파괴등 주민들의 피해 대상 지점별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으로 보살 조치 또한 충분한 하여 사업계획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p> <p>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할선면, 조양면, 소음, 진동등 환경상의 영향 평가가 조금 더 필요함</p> <p>3. 도지이용 구상안</p> <p>○ 계획노선의 지형 주변 생태계의 현황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용구지인 팔정보호중(수로,대중이 숲등) 식이 현상 고지 필요함.</p> <p>○ 복수, 휴식, 강중, 풍수, 침투등의 영향을 예측 평가 해야함.</p> <p>4. 대안</p> <p>○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도시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민원발성이 없도록 해야 하며 노선별 계획등은 지역주민의 권익이 최우선 되어야 함.</p> <p>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통·시료(별정보호중)조사시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조사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환경지역에 미치는 소음, 진동등도 영향 평가를 더 넓혀 예측 조사해야 함.</p>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 되도록 노력해야 함.</p> <p>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지역사별 구안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5. 4.</p> <p style="text-align: center;">(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p> </div>
<p style="text-align: center;">6. 공주대학교 - 2</p>	<p style="text-align: center;">7. 정남면 이장단협의회</p>
<div data-bbox="252 1122 737 183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p>○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환경영향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p>○ 국가 및 경기도 환경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p> <p>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화성시, 오산시 등으로 적정하게 설정됨.</p> <p>3. 도지이용 구상안</p> <p>○ 주변 여건을 고려한 도로계획이 필요함 것으로 판단됨.</p> <p>4. 대안</p> <p>○ 지역발전을 위한 적정노선을 수립하여야 함.</p> <p>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평가 항목, 범위 등은 적정하게 설정됨.</p>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p> <p>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의견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6. 5.</p> <p style="text-align: center;">(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p> </div>	<div data-bbox="868 1122 1315 185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p>○ 민사고속도로에 대한 교통량 분석, 경제를 분석 등 근거 자료를 통해 계획에 대한 적합성 과 타당성을 제시해야 하며 생활다양성 조사 범위를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사계절 현지 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하기 바람니다. 도로로 인한 생태계 단절과 생활다양성 감소, 파편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별정보호중 조사와 생태자연도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니다. 대기 질, 소음·진동은 계획지구 내에 있는 정은시설(학교, 주거지 등), 공공이용시설 등을 포함 할 수 있도록 5지점에서 10지점으로 확대하기 바라며 기상에 대한 자료는 최근 5년 간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기 바람니다.</p>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p>○ 생활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통로 확보(포드인 방식) 및 조류중독방지 목표 추가</p> <p>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p> <p>- 생활다양성 공간의 범위를 반경 500m에서 1km로 확대하기 바람.</p> <p>- 수원계보전 ; 운영 시 비경오원된 발생에 대한 거각 계획 수립.</p> <p>불부수중 증가로 인한 지하수 영향도 포함하기 바람.</p> <p>3. 도지이용 구상안</p> <p>○ 산인과 파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널과 교량을 최소화하기 바람.</p> <p>○ 생태축 훼손과 절개를 최소화하기 바람.</p> <p>4. 대안</p> <p>○ 계획 수립(action)시 인구 및 교통량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음. 계획의 적정성 과 타당성을 검증할 기준 도로의 이동량과 교통 경제를, 수요와 경제의 효율성 등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하기 바람.</p> <p>○ 임기비교 ; 각 대안에 따른 도지이용계획서 자료 필요함. 중앙 민원 접수(대안1)보다 하위 드 우회로 인한 민원 접수(대안2)가 더 합리적으로 보임. 입지에 대한 대안을 평가할 필요가 더 비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지만 대안2가 도로 길이도 짧고 정은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더 효과적으로 판단됨.</p> <p>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계획의 적정성 ; 기존 교통량, 이용률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 조사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 </div>
<p style="text-align: center;">8. 세마동 통장단협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9. 화성환경운동연합 - 1</p>

<p>○ 생물다양성 : 환경 Impact 범위 확대하고 야생동물 이동성, 조류 이동성 확보에 대한 조사 포함해야 함. 법정보호종 문헌 조사나 다른 조사로 서식이 확인될 경우 서식 시기에 정밀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 바람 (예를들어 5-6월 야간조사, 수리부엉이 11-1월 등)</p> <p>○ 공원조사에 화성시 자연생태도(비오름) 지도를 포함하기 바람.</p> <p>○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 현지조사로 실시하고 대기질, 조류-전등은 정온시설과 공공시설, 주거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고려할 때 지점을 5지점에서 10지점으로 늘리기 바람.</p> <p>○ 기상 : 2018년-2023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바람. (최근 5년 사이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온도,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기에 10년 간 평균을 이용하면 저평가될 우려가 있음)</p>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아라드나 마을은 시장단체협의회 행정복지센터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 공청회 요구 시 행정과 사업자는 실질적 임박기를 바람.</p> <p>7. 기타(제외의 의견청 및 인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소음, 진동, 대기 등 환경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황구지천 등) 생태축의 단절과 로드킬, 땅음뻍 조류 충돌 등으로 생물다양성도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 환경적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는 경제 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 06 . 10</p> <p style="text-align: center;">(화성~오산 교유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p>	-
9. 화성환경운동연합 - 2	-